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32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
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년 1월 14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

1. 폐지이유

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을 폐지함.

나.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자금의 지급 및 융자대상자의 관리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.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사회복지
과 주거담당, 전화 : 3396-5392, FAX : 3396-8756, E-mail : kmsin@jung
gu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
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

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
을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용자된 자금의 지급
및 용자대상자의 관리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.